

[해외판결]

# AT&T와 TimeWarner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미디어공룡탄생 #수직결합인정 #워너는워너  
#기다려라아마존넷플릭스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난 6월 13일 **AT&T**와 **타임워너**(TimeWarner)의  
합병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미국 2위의 통신회사와 3위 미디어회사의 초대형  
합병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시가총액 2,864억 달러에 달하는

**'미디어 공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2년 전에 계약이 체결된 합병절차가 이제서야**

**매듭을 짓게 된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요?**



미국 법무부(DOJ)가 합병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DOJ는 두 기업의 ‘수직결합(Vertical Merger)’이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7조에 위반되는 경쟁제한적 합병이라고 판단하고, AT&T의 자회사 DirecTV나 타임워너의 Turner를 매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T&T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직결합(Vertical Merger)’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 ‘비수평결합(Non-Horizontal Merger)’입니다. 수평결합처럼 시장에서 즉각적인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결합이 시장진입 장벽을 높이거나(시장봉쇄효과), 참가자들 사이에 담합을 촉진하거나(협조효과), 규제 회피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합니다.

DOJ, Non-Horizontal Merger Guidelines 4.0, 4.2



우리 공정거래법은 수직결합에 대해 시장봉쇄효과\*와 협조효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합니다.

\*시장봉쇄효과 : 경쟁사업자의 구매선/판매선을 봉쇄,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 봉쇄

\*\*협조효과 : 경쟁사업자 간 협조가능성 증가 여부

기업결합심사기준 VI. 2

그렇다면 DOJ가 이 사건에서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DOJ는

## 협상력강화이론

(Increased-Leverage Theory)

이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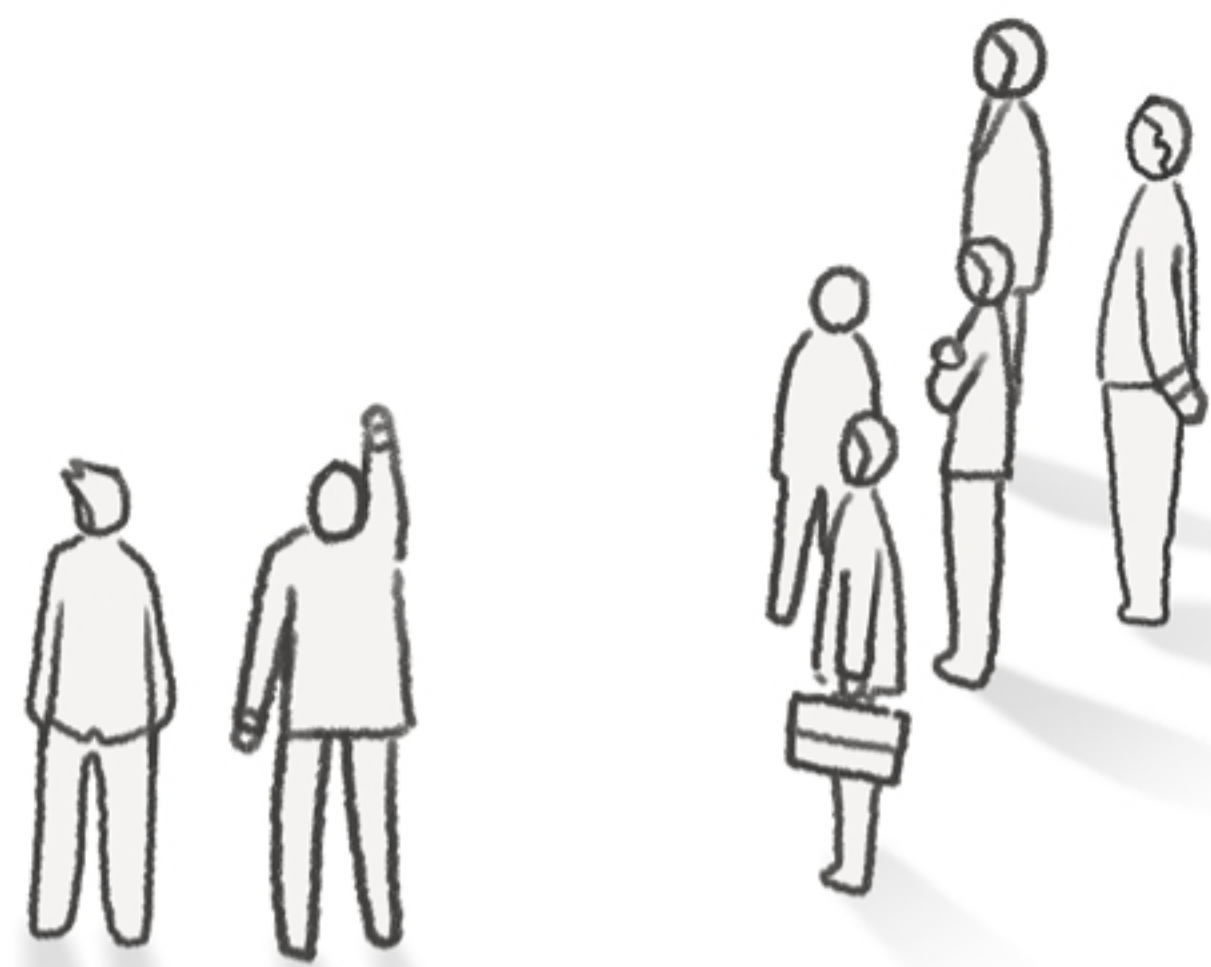
이게 뭐냐면....





타임워너는 TV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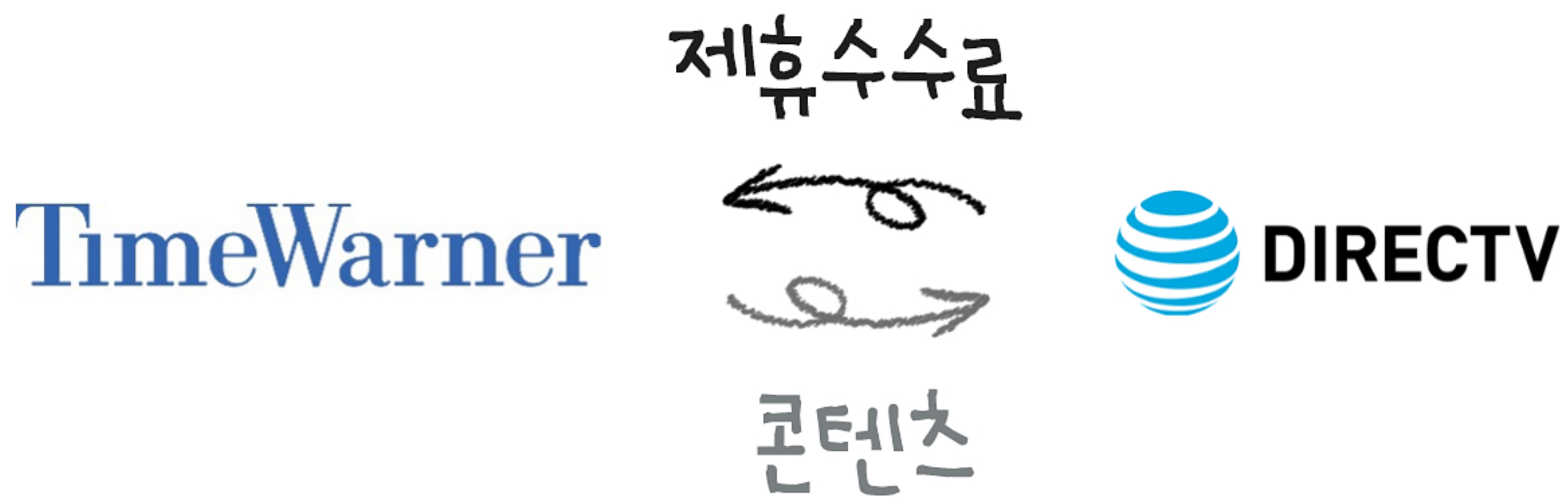
대략 이 정도





AT&T의 자회사인 DirecTV는 위성TV사업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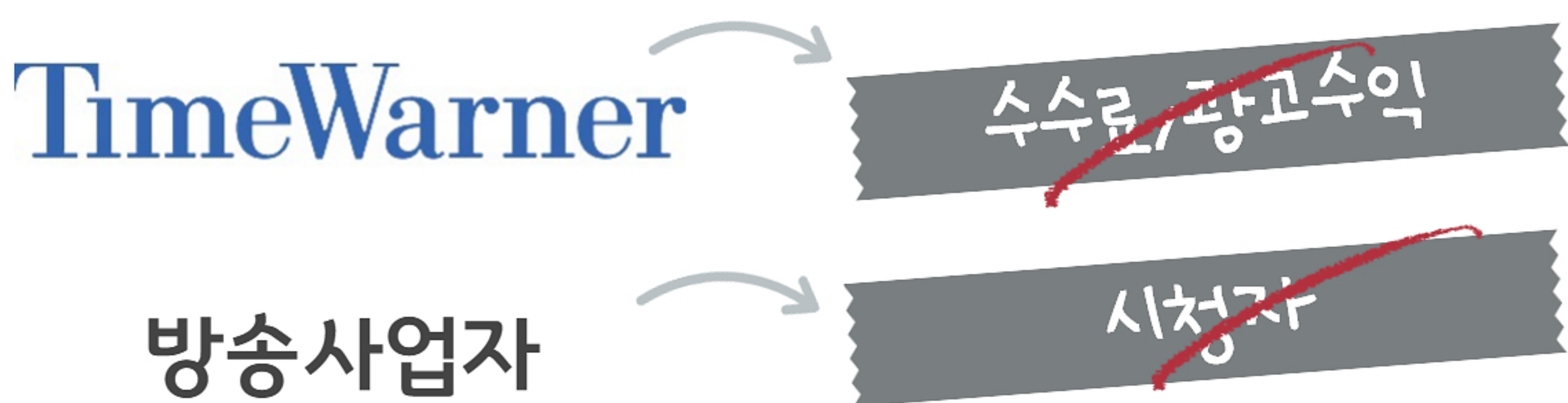
타임워너에 제휴수수료(affiliate fee)를 주고 콘텐츠를 구매합니다.





## 협상이 실패하면?

타임워너는 수수료/광고수익을 얻지 못하고  
방송사업자는 왕좌의 게임 덕후 시청자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협상에 결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유인이 생긴  
다고 합니다.

기존에 문제된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과 좀 다릅니다.  
결합을 해도 방송사업자들의 방송콘텐츠 구매가  
“**봉쇄**” 되는 건 아니니까요.



## 타임워너가 AT&T와 합병하면?



다른 방송사업자들과 ‘열심히’ 협상을 할 유인이 줄어들  
겁니다. 타임워너에겐 AT&T의 DirecTV가 있으니  
까요. #든든

DirecTV의 경쟁 방송사업자 역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타임워너와 콘텐츠 제휴협상에  
실패하면 왕좌의 게임에 목매는 시청자  
들은 DirecTV로 가버리겠군!!”



타임워너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임워너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이 수수료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 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DOJ가 제기한 협상력강화이론

(Increased-Leverage Theory)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DOJ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DOJ가 합병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였습니다.

① 수직기업결합은 시장점유율을 통해 경쟁제한  
성을 추정하는 수평기업결합과 다르다.

② DOJ는 경쟁사업자의 신청서, 내부 문서, 경제  
전문가의 가격인상예측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하였  
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법원은 협상력강화이론 자체의 타당성보다,  
'증명부족'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이



그래서 미국 분위기는 어떤가요?

난리입니다.

'워너미디어'는 시가총액 2,864억 달러(약 308조 7,392억 원)가 되어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에 이어 5위 미디어기업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합병에도 영향을 미칠텐데요. 유·무선 통신, 초고속 인터넷, 유료방송 매체를 소유한 통신방송 분야가 콘텐츠와 결합된 '미디어' 산업으로 재편될 겁니다. 당장 AT&T 경쟁사 Comcast도 21세기폭스를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디즈니가 먼저 발표한 인수금액(524억 달러, 주식 교환 방식)보다 금액을 높였다네요(600억 달러, 전액 현금). #덜덜



공정이



어쨌든 수직결합은 쉽게 쉽게 가는 거 아니가요?



그건 아닙니다.

판결과 무관하게 대규모 수직결합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계속 유지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 판결도 '특정 사안에 대한 결론'이라고 판시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하였습니다.

다만,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실증적 증거 (Real-World Evidence)에 입각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이



이번 판결이 우리한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기가 어렵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쿨럭

이달 말 유료방송 최대사업자인 KT 인터넷 TV의 시장 점유율을 33.3%로 제한하는 '유료 방송 합산 규제'가 풀리는데요. 합산 규제가 없다면 KT가 점유율을 늘리려고 할 거고, 그러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케이블 TV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콘텐츠기업 CJ E&M과 홈쇼핑업체 CJ오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현재 합병이 확정되었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연락 주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정이님이 나갔습니다.  
채팅방으로 초대하기

## 지평 공정거래팀

지평 공정거래팀은 법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외국 로펌 등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평 공정거래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T. 02-6200-1720  
E. ghkim@jipyong.com



이병주 변호사

T. 02-6200-1765  
E. bjlee@jipyong.com



장 품 변호사

T. 02-6200-1766  
E. pjang@jipyong.com